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- 미래교육과 -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1호 및 제72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 (사업내용)	출연금액	총 계
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(인재육성 장학사업)	462,200	6,373,200
영등포구 문화재단 출연금 (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)	5,911,000	

※ 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○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

- 1) 범 위 : 기본재산 적립, 인재육성장학금, 운영비
- 2) 출연금액 : 462,200천원

○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

1) 범 위

- 구립도서관 5개소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사업비, 인건비, 운영비 등
 - 구립도서관: 대림·문래·선유·여의샐강·SK생각공장(가칭) 도서관
 - 작은도서관: 밤동산·대림1동(가칭) 도서관
- 그 외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
-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, 사업비, 인건비 등

2) 출연금액

-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: 5,453,000천원
- YDP창의예술교육센터: 458,000천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재산의 조성), 제16조(재정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의 지원)

5. 검토의견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
-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기부금 수입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,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운용소득(이자수익)이 적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임.

따라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영등포문화재단은 구립 및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·감성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검토결과

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
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.

- 따라서,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①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~③(생략)

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

제16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(생략)